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관련 문답자료

2005. 6. 16

재 정 경 제 부  
국 제 금 융 국

## 〈목 차〉

1. 이번에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 및 기대 효과는? (p.1)
2.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p.2)
3. 이번에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특징은? (p.4)
4.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외환의 과다유출 우려는 없는지? (p.6)
5. 이번 외환제도 개선조치에 따라 외화의 불법유출이나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우려 등에 따른 보완대책은? (p.7)
6.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범위를 확대한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p.9)
7. 이번 조치로 편법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이 얼마나 제도내로 들어오게 될지 의문임? (p.13)
8.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배경은? (p.14)
9. 해외투자보험 기능의 강화방안은? (p.15)
10. 국제금융기구(MDB)의 협조유자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은? (p.16)
11. 자본거래 허가제는 예정대로 금년말에 폐지할 예정인지? (p.17)
12.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의 시행시기는? (p.19)

# 1. 이번에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 및 기대효과는?

-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외환정책 기조는 “유입촉진, 유출 억제”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경제발전과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최근 외환의 초과공급이 지속
    - 이러한 상태는 금년에도 지속될 전망으로 약 200억불의 국제수지 흑자 예상(경상 140억불, 자본 60억불)
  - 이와같은 대외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그동안 축적된 외환을 바탕으로 위축되었던 국내기업 등의 해외투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증대
    - 특히 외환의 초과공급상태는 국내 통화 및 외환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환율의 하락을 통해 수출중소기업들의 애로요인으로 작용
  - 해외투자 활성화로 예상되는 기대효과
    - ① 기업의 해외투자는 국내외 생산을 통합함으로써 거래비용 절감,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데 기여
    - ② 최근 IDB 가입으로 5개 국제개발금융기구(MDB)\*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이들 기구의 조달시장 참여 등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
-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 IBRD, ADB, AfDB, EBRD, IDB
- ③ 해외투자의 증대는 그동안 외환공급 초과에서 외환수급의 균형을 도모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시경제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2.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경우 국내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금번 방안을 마련하게 된 계기는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돕고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 다시말해 중국·베트남 등 신흥시장 국가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을 후원하여 이들 국가에서의 국내기업 선점을 지원하고
  - 다국적 기업을 통한 전세계적 R&D 및 생산거점의 마련으로 우리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이러한 해외투자의 확대는 국내기업의 생산증가로 이어짐으로써 국내산업 공동화보다는 相生的 共同成長의 계기가 될 것임
- 다만, 생산시설만 해외로 이전하는 ‘移轉的 海外投資’는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고 실업을 확대하는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대한 억제하고
  - 국내의 생산과 수출을 유발하는 ‘生産的 海外投資’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임

**<참고> 해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연구**

- ① 산업자원부·산업연구원의 국내제조업 중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실태조사('04.9월, 1,050업체) 결과 해외투자 이후 국내생산은 전체기업의 34.4%가, 국내 매출은 42.9%가 각각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② 산업자원부의 '0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母기업의 핵심 부품·소재 수출과 해외현지법인의 조립·생산의 산업내무역 (Intra Trade)으로 '03년중 68.6억불의 무역수지 흑자(전체 흑자의 46%)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
  - ③ 산자부·한국개발 공동조사('03.9월, 9,369업체 대상)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 母企業의 생산·매출·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국내기업의 對중국·아세안투자 실태조사결과)
    - 특히, 對중국 투자의 경우 중간재·자본재 수출 증가를 통해 국내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추정
- \* '04년 對中수출중 원자재·자본재 비중이 92%이고, 대중수출 상위 20개 품목 대부분이 전자제품 등 수출용 중간재임
- ④ 전미경제연구소(NBER) '05.2월 발표자료에 따르면 美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활동연구 결과 해외투자 1불 증가시 국내투자가 오히려 3.9불 증가

### 3. 이번에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특징은?

-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에서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
  - 이를 위하여 외환제도를 개선(규제 완화)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정비

#### ① 해외투자는 국가경쟁력 강화수단

- ◇ 글로벌 경제에 맞는 해외투자로 우리경제가 더 커집니다
- ◇ 해외투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 해외투자를 늘리면 수출구조와 국내 산업구조를 개선시켜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고 수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 ② 해외투자는 수출촉진을 지원하는 수단

- ◇ 넘치는 달러, 가파른 원화 절상을 부채질합니다
- ◇ 달러의 물꼬를 터줘야 원화가치가 안정됩니다
- ◇ 해외투자,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풀어 줍니다

※ 해외투자를 늘리면 외환수급의 안정으로 외환 및 통화정책상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③ 생산적 해외투자로 산업공동화 우려 차단

- ◇ ‘이전적 해외투자’는 억제, ‘생산적 해외투자’는 활성화
- ◇ 국내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막도록 ‘생산적 해외투자’를 촉진하겠습니다
- ◇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방향으로 해외투자를 늘려나가겠습니다

④ 해외투자 확대가 자본의 대량유출로 연계되지 않음

- ◇ 자본의 '유입촉진'에서 '유출입촉진'으로
- ◇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도 함께 강화됩니다.

※ 이번 조치로 예상되는 추가 자본유출액은 연간 10~15억불 정도로 금년도 외국인투자(직·간접) 유입전망(160억불)의 6~9%정도 입니다.

⑤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을 측면 지원

- ◇ 외환규제 완화는 '금융허브' 도약의 첫걸음
- ◇ 활발한 해외투자,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의 밑거름이 됩니다

※ 외환규제의 빗장을 풀어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⑥ 국제개발금융기구를 해외투자의 채널로 활용

- ◇ 5개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네트워크가 국내기업 해외진출의 디딤돌이 됩니다

※ IDB 가입을 계기로 5개 국제금융기구(MDB)와의 다자간 네트워크 구성을 마쳤으며, 정부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⑦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감독방식으로 전환

- ◇ 해외투자, 물꼬는 터주되 편법·불법에 대한 감독은 강화

※ 사전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모니터링이나 random check를 통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사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⑧ 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두되, 개인의 부동산취득 현실화

- ◇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규제는 현실에 맞게 개선하겠습니다

※ 편법적인 해외송금 등을 통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던 사례들을 실수요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한하여 합법적인 제도 안으로 유인하겠습니다. 또한 이는 국내 부동산 가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4.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외환의 과다유출 우려는 없는지?

-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산업생산의 확대를 통한 새로운 국부의 창출을 위한 것으로
- 기업의 투자자금 등 외환의 해외유출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10~15억불)되나 그 유출규모는 현 경상수지 흑자 수준에 비추어 문제가 되지 않음

#### <우리나라 국제수지 추이>

(단위 : 억불)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4월	(전망) 1~4월 <sup>P</sup>	
국제수지	116.4	258.6	359.3	117.1	200	102.1
경상수지	53.9	119.5	276.1	72.7	140	50.4
자본수지	62.5	139.1	83.2	44.4	60	51.7

- 또한 해외투자 활성화 추진과 함께 외국인의 국내투자도 적극 유치함으로써 외환의 유출과 유입을 동시에 활성화하고자 하려는 것임

#### <외국인 직접투자 추이>

(단위 : 억불, %, 신고기준)

	~'00	'01	'02	'03	'04	누계
외국인투자	642.6	112.9	91.0	64.7	127.7	1,038.9

\* 산업자원부, 수출입은행

5. 이번 외환제도 개선조치에 따라 외화의 불법유출  
이나 국내외환시장의 불안우려 등에 따른 보완  
대책은?

□ 최근 해외취업자 및 유학생이 크게 증가하면서 불법외화  
유출사태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 환치기사범으로 단속된 외환사범은 '04년중 건수기준으로 97%,  
금액기준으로 531% 증가하였음

□ 정부는 해외부동산 취득 등을 위한 불법외화유출에 대하여  
관계기관별로 중점 단속하고 있음

○ 국세청은 해외부동산취득과 관련한 탈세혐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 관세청은 불법 외화유출의 통로인 환치기사범을 집중단속

\* '04년중 관세청에서 적발한 외환 및 재산도피사범은 총 1,943건에  
금액으로는 3조 7천억원 수준임

○ 금감원은 용도가 불분명한 고액 해외송금을 중심으로  
불법여부를 조사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제재조치

\* 지난 5년('00~'04년)간 총 943건을 적발하여 27건을 검찰에  
통보하고 592건에 대해서는 외환거래정지 조치를 취함

□ 아울러 외환전산망 및 조기경보시스템(EWS)의 운영을  
통해 외환거래를 수시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국제수지 불균형 심화 등 유사시에는 Safeguard조치\*의  
발동을 통해 외환시장의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음

\* 대외결제 · 거래의 일시정지, 외환집중제, 가변예치 의무제

<참 고> 불법 외환거래 단속 실적

1. 관세청

(건, 억원)

구 분		'02년		'03년		'04년		전년동기증감(%)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외 환 사 범	환 치 기	313	1,196	283	2,810	558	17,727	97	531
	불 법 상 계	26	2,321	27	4,702	43	9,628	59	105
	불법 자본거래	17	765	16	3,057	35	3,033	119	△1
	수출채권미회수	15	3,395	18	8,947	13	1,905	△28	△79
	제3자 불법지급영수	21	203	74	588	139	1,650	88	180
	은행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영수	110	490	177	642	344	994	94	56
	무역가장 불법지급영수	7	43,231	2	17	4	303	100	1,660
	불법 휴대반출입	632	519	693	394	759	387	10	△2
	기 타	18	555	21	876	22	998	5	14
	소 계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5	44	66
재 산 도 피 사 범	무역가장 불법지급	1	1,259	-	-	2	97	-	-
	환 치 기	-	-	1	4	11	26	1,000	555
	수출채권미회수	2	206	1	1,762	1	7	0	△100
	불법 휴대반출	-	-	-	-	2	5	-	-
	기 타	2	107	-	-	5	51	-	-
	소 계	5	1,572	2	1,766	21	186	950	△89
자 금 세 탁 사 범	불법외환거래이용	-	-	1	4	5	106	400	2,519
	소 계	-	-	1	4	5	106	400	2,519
합 계		1,164	54,137	1,314	23,803	1,943	36,917	48	55

2. 금감원

(단위 : 건)

구 분	적 발 실 적		계	조 치 실 적	
	기 업	개 인		거래정지	경고 등
2000년	23	9	32(1)	10	22
2001년	82	41	123(10)	77	46
2002년	185	193	378(12)	190	188
2003년	124	91	215(4)	133	82
2004년	98	97	185(-)	182	13
계	512	431	943(27)	592	351

\* ( )안은 검찰통보 실적

## 6. 해외부동산 취득범위를 확대한 배경과 구체적 내용은?

□ 최근 해외취업·유학 등 국민의 해외진출 및 거주사태가 급증하여 해외 부동산 취득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상 제약이 많음에 따라

○ 불법·편법적 방법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 최근 미국·호주 등에서 증여성 송금 등 편법적 자금유출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

○ 따라서 이를 합법적인 제도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현행제도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 현재까지 한국은행에 신고된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사례는 全無

□ 해외 부동산 취득제도 개편 내용 중

○ 취득가액(송금기준)을 현행 '30만불이내'에서 '50만불\*이내'로 증액한 것은 '96년이후 유지되어온 송금기준을 그동안의 해외부동산 가격상승 수준을 반영하여 현실화

\* 50만불 산정근거 : 美 워싱턴, LA 등의 한국인 주요 거주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45~50만불 수준임

○ 또한, 현재는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시 한은이 송금액에 상관없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20만불 초과'시에만 국세청에 통보되도록 변경하여 편법적인 송금유인을 실질적으로 완화

\* 해외유학경비 등은 일정금액(연간 10만불)을 넘어서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는 것을 고려

□ 현행 한국은행 신고수리제도는 그대로 유지하여 개인의 불필요한 투기적 해외부동산 취득은 계속해서 억제해 나갈 예정이며

○ 특히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현행 벌칙조항\* 등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나가고자 함

\* 미신고시 1년이내의 외국환거래의 정지 및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조치

<참 고 1> 해외부동산 취득 현황

□ 외국환거래법 시행이후 현재까지('99.4~'05.5) 거주자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한은신고수리 건수는 총 28건(24백만 달러)에 불과함

○ 취득자는 모두 법인이었으며, 개인은 한건도 없었음  
(단위 : 건, 천달러)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법 인	1	2	2	5	9	6	3	28
개 인	-	-	-	-	-	-	-	-
총 건수	1	2	2	5	9	6	3	28
취득금액	700	1,123	455	6,247	3,610	1,355	10,680	24,170

주: 한국은행 신고수리 기준(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 부동산 종류별로는 업무수행을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원의 주거용 주택이 9건, 사업용 부동산이 6건, 기타 2건 등임

(단위 : 건)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기업의 사무실, 창고등	1	-	-	1	5	2	2	11
주거용 주택 <sup>1)</sup>	-	1	1	1	3	3	-	9
해외사업용 부동산	-	1	1	3	-	-	1	6
기 타 <sup>2)</sup>	-	-	-	-	1	1	-	2
총 건수	1	2	2	5	9	6	3	28

주: 1) 현지법인 및 해외연수를 위해 파견된 자의 주거용 주택

2) 병원설립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부동산 등

□ 부동산 소재지별로는 아시아(주로 중국)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4건), 서유럽(2건), 동유럽(2건) 등의 순

(단위 : 건)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아시아	1	-	1	4	8	3	2	19
미 국	-	1	-	-	1	1	1	4
서유럽	-	1	-	-	-	1	-	2
동유럽	-	-	1	1	-	-	-	2
기 타	-	-	-	-	-	1	-	1
총건수	1	2	2	5	9	6	3	28

<참 고 2> 해외부동산 취득에 관한 외국제도

국 가	현 황
싱가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현재 정부의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자유로이 취득이 가능</li> </ul>
대 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부동산 취득 자체를 규제하지는 않으나, 대만내 자금을 활용하여 해외 부동산을 구매할 경우 외환 반출과 관련한 규제가 있음</li> <li>○ 외환반출은 연간 총액이 US\$ 500만을 초과할 경우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함</li> </ul>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사전신고나 보고는 불필요함</li> <li>- 다만, 구입액이 3,000만엔(약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일본은행을 통해 재무성에 신고하여야 함</li> </ul>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나 규정이 없음</li> </ul>
중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개인이 외국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해외 자산의 취득)하는 경우, 관련 외환송금시 사전에 중앙은행의 비준을 받도록 규정함</li> <li>- 송금액이 1만불 이상인 경우, 거주지 외환관리국을 거쳐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li> <li>- 상기 비준 신청시 관련 협의서, 계약서 등을 첨부토록 하고 있으며 동 첨부서류의 심사를 통해 외환송금의 목적과 그 적절성 등을 심사하고 있음</li> </ul>

## 7. 이번 조치로 편법적인 해외부동산 취득이 얼마나 제도내로 들어오게 될지?

-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그동안 외환자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많은 제한을 두고 있었던 분야로
  - 이는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로 인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경제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이번에 추진되는 내용은 그동안 불법·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던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을
  - 최대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 실수요자에 한하여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취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
- 다만 이번 방안에 따른 제도 개선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 '02.4월에 발표한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에 따르면 2단계('06~'08)중에 해외부동산 취득이 자유화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 제도 시행에 따른 진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8.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 배경은?

-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기관들은 해외점포를 대폭 정리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 진출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

### <은행의 연도별 해외점포 추이>

(단위 : 개)

진출형태	1997말	1998말	1999말	2000말	2001말	2002말	2003말	2004말
현지법인	164	43	29	28	26	26	24	26
지점		74	69	69	68	63	66	64
사무소	93	17	14	12	11	14	18	18
계	257	134	112	109	105	103	108	108

주) 청산중인 점포 제외,

- 이에 따라 해외에 기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우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보다는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상황

### <해외 현지법인의 자금조달 구조>

(단위 : 억불, (%)

	한국계 금융기관	외국계 금융기관	관계회사	회사채 등	합 계
금 액 (비 중)	35 (29.2)	62 (51.7)	13 (10.8)	10 (8.3)	120 (100.0)

\* 자료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현지법인 경영현황 분석('03 회계년도 기준, 수출입은행)

- 특히 중국, 베트남 등 개도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 지역에 국내금융기관 해외점포의 확대를 통해 금융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이를 위해 해외점포 설치를 위한 국내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신고수리기간 단축 등)하고
- 진출대상국의 인가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필요시 국가간 금융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

## 9. 해외투자보험 기능의 강화방안은?

- 해외투자보험은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여 기업의 해외투자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기업의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인식부족과 '비상위험'만을 담보한다는 성격 때문에 해외투자기업들로부터 외면되어 온 것이 현실임
    - \* '04년의 경우 총 58억불의 해외투자금액 중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805억원에 불과함
- 따라서 우리기업이 해외투자를 할 경우 해외투자보험에 가입하는 유인을 확대하기 위하여
  - '비상위험'외에 '신용위험'에 대해서도 보장되는 신상품의 개발과 수출보험기금의 확충방안(중장기 과제)을 마련하였음
    - \* 비상위험은 투자대상국의 강제수용·전쟁·송금제한·약정불이행 위험을 의미하며, 신용위험은 투자사업의 성과부진 또는 경영악화로 인한 파산 등의 위험을 말함
- 다만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성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먼저 도입하고 다른 분야로 확대할 계획임

## 10. 국제개발금융기구(MDB)의 협조유자를 강화하기로 한 배경은?

- 최근 IDB 가입으로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MDB)\*와의 네트워크 형성이 완료됨

\* IBRD, ADB, EBRD, IDB, AfDB

- 국제개발금융기구는 자신이 발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회원국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에 모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 것을 계기로
  - 이들 기구들이 발주하는 조달시장에 우리기업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

### <우리나라의 출자비중 대비 조달시장 참여비중>

(단위: %)

구 분	출자(출연)비중	조달시장 참여비중*
IBRD	1.006	0.2
AfDB	0.445	1.1
A D B	5.094	2.4
EBRD	1.01	-
IDB	0.002	-

- 정부는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국제개발금융기구 조달시장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 5대 국제개발금융기구와 수출입은행간의 협조유자(Co-Financing)체결 등 국내기업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할 계획임

## 11. 자본거래 허가제는 예정대로 금년말에 폐지할 예정인지?

- 외국환거래법은 외환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부 자본거래에 대해서 재정부 등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항목 주요 내용

- 다만 자본거래 허가제는 동법 부칙에서 일몰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금년말까지만 유효하고 내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되도록 되어 있음

\* 당초 '00년말까지 신고제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외환시장 및 대외 여건 등을 감안하여 '05년말까지 1차연장

- 현재 자본거래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이행여건이 충분히 성숙했는지에 대한 점검과 허가제의 신고제로의 전환에 따른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 한국은행, 금융감독위(원),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로 T/F를 구성·운영중임

- 동 점검결과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금년말에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임

<참 고>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허가항목 주요 내용**

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허가제**

- 국제투기자본의 환투기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비거주자의 원화funding 제한

\* 비거주자의 원화차입(10억원 이상), 원화증권 차입(50억원 이상), 1년미만 단기원화증권 발행 등

- 통화·외환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원화국제화 유보

\* 거주자의 단기원화증권 해외발행 등

② **대외건전성 확보 및 불법 자본유출 방지를 위한 허가제**

- 보증대지급 등을 통한 편법 자본도피 및 해외부실의 국내전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한

\* 30대계열의 한도초과 현지법인 보증, 거주자의 대외보증 등

- 외환건전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본거래의 제한

\* 금융기관 이외의 파생금융거래, 재무불건전기업의 단기외화차입 등

## 12. 외환거래 완전자유화의 시행시기는?

-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2차에 걸친 외환자유화를 단행함으로써 외환거래 자유화조치를 대부분 마무리하였음
  - 1단계\*로 기업 및 금융기관의 대외영업활동과 관련된 대부분의 외환거래를 자유화하고,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를 '원칙자유·예외규제(Negative System)'로 개편('99.4월)
    - \* 기존의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고, 「외국환거래법」을 제정('98.9월)
  - 2단계에는 여행경비·해외이주비의 한도폐지 등 개인의 외환거래에 대해서 대폭 자유화\*('01.1월)
    - \* 자본의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신고·보고·확인 등 일부 절차적 제한은 존치
- 정부는 '02.4월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외환자유화를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외환시장 중장기 발전방향>

- ◇ 제1단계('02~'05) :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제한은 존치하되 절차적 제한완화
- ◇ 제2단계('06~'08) : 자본거래 허가제 폐지 등 잔존제한 대폭 축소
- ◇ 제3단계('09~'11) :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외한 외환제도의 완전자유화

□ 그러나 정부는 최근의 경제상황 변화를 감안하고,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당초보다 외환자유화\*를 앞당겨 추진할 계획임

\* 외환자유화는 외환거래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보고 등 외환 모니터링의 강화 및 random check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 이는 외환거래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선진통상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써의 외환자유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한 목적임

□ 금년 하반기 중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운영 등 검토작업을 거쳐 외환자유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참고> **현행 외환 자유화 추진계획**(’02.4월)

구 분	제1단계(’02~’05)	제2단계(’06~’08)	제3단계(’09~’11)
무역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 간소화</li> <li>- 전신망보고양식 간소화</li> <li>○ 결제방법의 간소화</li> <li>- Multi-netting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회수의무 면제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권회수의무 폐지</li> <li>- Safeguard에 규정</li> </ul>
자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제 및 신고제의 완화</li> <li>-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 한도 확대</li> <li>- 거주자의 해외차입·외화 증권발행신고 한도액(3천만불) 상향 조정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제 폐지 및 신고(수리)제 전환</li> <li>- 비거주자의 원화 funding</li> <li>- 재무불건전기업의 단기차입</li> <li>- 장외신용파생거래 등</li> <li>○ 신고제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li> <li>○ 지급증빙서류 제출 의무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제 폐지</li> <li>- 다만 비거주자의 원화funding 재무불건전기업의 단기차입 장외신용파생거래는 신고제 유지</li> </ul>
무역외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고액 대외지급 관련 확인제도 폐지</li> <li>- 체재비·유학비, 증여성 송금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은행을 통한 관리 폐지</li> </ul>	-
외국환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역거래에 대한 확인의무 간소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거래에 대한 확인의무 면제</li> <li>○ 지정거래은행제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업무취급 기관제도 폐지</li> <li>- 송금업무 자유화</li> </ul>
제2금융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업무영역 확대</li> <li>- 장외파생상품 허용</li> <li>- 은행간시장 참여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업무 취급 자유화</li> </ul>	-
환전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환 매도업무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전업무 등록제 폐지(신고제 전환)</li> </ul>	-
원화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제한 완화</li> <li>- 수출한도액 상향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제를 신고수리제로 전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화수출제한 폐지</li> </ul>